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을 위한 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는 과실의 크고 작음을 떠나 부상을 당한 쪽을 「피해자」라 하며, 그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자동차보험에는 강제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기재합니다)과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 「책임보험」은 피해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소유차량 1 대당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 「임의보험」은 책임보험으로는 메울 수 없는 손해배상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책임보험	대 비	임의보험
가입하여야 한다(의무)	가 입	임 의
인신손해만	대 상	인신손해와 재물손괴
사 망 3,000만엔(한도액) 손 해 120만엔(한도액) 후유장해 75만~4,000만엔 (1~14의 장해등급에 따름)	지불한도액	보험계약 한도액까지 보상

인신손해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며 손해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망사고로 손해배상액이 7,000 만엔 나왔을 경우, 먼저 책임보험으로 한도액인 3,000 만엔을 보상받게 되며, 부족한 4,000 만엔은 가해자가 가입한 임의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실책임을 물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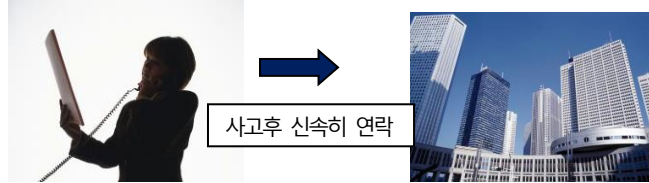
가해자나 피해자가 각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증명서와 진단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합니다.

■우선지급금과 가불금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의가 성립되어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의 제도로써 우선지급금, 가불금제도가 있사오니 절차는 각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임의보험

※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가입하신 각 손해보험회사 등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고후 신속히 연락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다음과 같은 인신사고는 책임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가해자 불명의 뺑소니사고
-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이 책임보험에 미가입
-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의 차량이 도난차량일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국토교통성)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 등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원조와 구제제도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에는 「아동부양수당, 모자복지자금,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등의 생활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거주지를 관할하는 사회복지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가장의 교통사망사고로 인하여 유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공영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가능한 경우가 있사오니 구마모토현 주택과 또는 거주지의 관할관청 주택담당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

경찰서	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Tel	- - (내선)

【메모】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머리말

저희 경찰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직원이 피해자와 동행하며 교통사고의 조사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앞으로의 불안에 대하여 상담을 들어주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은 사고조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 지, 뺑소니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잡혔는지, 상대방의 처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큰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구마모토현경찰


외국인을 위한 지원

■ 구마모토현 국제 협회

구마모토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불편없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등의 22 개국어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구마모토현 외국인 지원 센터 (080-4275-4489)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경찰상담창구

<p>【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창구】</p> <p>인근 경찰서 교통사고수사담당과 고속도로 교통경찰대</p> <p>※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교통과 직원이 담당합니다.</p>	<p>QR 코드로 구마모토현 경찰홈페이지에 들러서 「각종전화번호안내」에서 해당하는 경찰 (대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해 주십시오.</p> 
<p>【경찰안전상담실】 경찰 본부 청사 1 층 TEL 096-383-9110</p>	<p>각종 경찰상담접수</p>
<p>【경찰분부범죄피해자지원실】 TEL 096-381-0110 내선 2193~2195 평일 (월~금) 8:30~17:15</p>	<p>범죄피해 지원에 관한 상담</p>

경찰 이외의 상담창구

<p>【교통사고피해자 긴급전화-NASVA】 TEL 0570-000738 접수 시간 10:00~12:00 13:00~16:00 (도·일·공휴일·연말연시는 제외)</p>	<p>사고 후의 대응 전반, 보험의 절차, 의료 과실비용, 합의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p>
<p>【구마모토현 교통사고상담소】 전화·면접 TEL 096-333-2295 접수 시간 10:00~12:00 13:00~16:00 (도·일·공휴일·연말연시는 제외)</p>	<p>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 합의 절차, 배상액의 산정 방법, 과실의 비율, 자동차 손해 책임 보험의 청구 등, 교통 사고에 관한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p>

피해자지원제도

경찰에서는 경찰직원 등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교통사고 조사상황 설명이나 앞으로의 불만에 대하여 상담을 들어주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연락제도

피해자 연락제도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 전치 3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특정사고로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조사상의 지장이 없는 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 중에는 사고의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 정보제공을 바라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담당조사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상대방 등에 관한 정보

- 주소, 성명, 연령, 교통사고 발생일시, 발생장소, 조사상황 등

■ 사고 상대방의 처분 등에 관한 정보

- 검거상황, 송치검찰청, 기소 및 불기소의 처분결과 등

※ 상대방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정보내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조사

【진술청취·조사】

경찰관이 차량운전자들로부터 사고상황이나 사고원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를 묻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거나 뺑소니사고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되므로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이 당신을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등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나 사고직전까지 함께 계셨던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물어, 그 내용을 경찰관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품제출】

사고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절차로 운전한 차나 블랙 박스, 교통사고 당일 입었던 옷 등을 증거품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한 신속히 돌려드립니다.

【현장검증입회】

교통사고 현장검증에서 경찰관에게 사고상황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해명과 정확한 사고상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서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절차의 흐름도

차량 운전자들의 설명이나 사고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혀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 하며,

